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24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의 업종은 5명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목재생산업 및 석채채취업·석채가공업은 10명 미만인 경우, 나무병원 및 산림사업법인은 5명 미만의 경우가 각각 소상공인에 해당하게 됨.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내투자·소비 위축, 고금리, 물가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영업 부

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상공인 영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곧바로 현행법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하기보다는 일시적 유예기간을 두고 자율적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제로 목재생산업자의 적발건수는 대부분 분기별 실적보고 미준수(63.5%), 장부 및 서류미비(18.5%), 등록증 오류(14.2%) 등이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등록기준 미준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목재생산업자 소상공인으로서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제재처분을 유예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취지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목재생산업자 중 등록기준 미준수 비율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에서는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의 경우 기술인력의 육아휴직 후 퇴직, 근로자 사망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 시 곧바로 새로운 대체인

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일시적 사유로 인한 행정제재처분은 상당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에 행정제재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입법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5년간 나무병원 중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은 2019년~2020년 각 1건, 2021년 115건으로 급증 후 2022년 5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 18건, 2024년 7월 기준 18건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2021년도의 경우 2종 나무병원 등록기준 강화, 2023년도의 경우 2종 나무병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2023.6.27.) 만료에 따라 행정처분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나무병원 중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에 행정제재처분을 유예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입법취지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등록기준 미준수 사례 비율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석재산업 분야 소상공인으로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일시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석재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준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석채채취업자 및 석재가공업자 중 소상공인으로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제재처분을 유예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취지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등록기준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